

「제3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 개최



본 협회(회장 김 용, www.kfta.org)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후원한 「제3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가 4월 1일 기업, 학계, 법조계, 소비자 및 정부인사 등 3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정부포상 수상자로는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서 공정하고 엄정한 심결을 통해 경쟁질서규범 확립에 공헌한 고려대 경제학과 윤창호 교수가 홍조 근정훈장을, 공정위 정책평가위원회와 소비자정책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한 서울대 소비자동학과 여정성 교수가 근정포장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기업내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신세계 백화점부문 석강 대표이사과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수립에 기여한 KDI 임영재 법경제팀 팀장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다. 국무총리표창에는 사내에 하도급법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등 자율준수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삼성전자 전광호 상무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한 법무법인 서현 김영은 대표변호사가 수상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장표창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는 등 시장경쟁 질서의 확립과 투명경영에 공헌한 신세계건설 노태욱 대표이사 등 8개 기업의 대표이사과 소비자보호 관련 정책의 발전에 공헌한 소비자단체 임직원 5명 및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교수·변호사 등 5명이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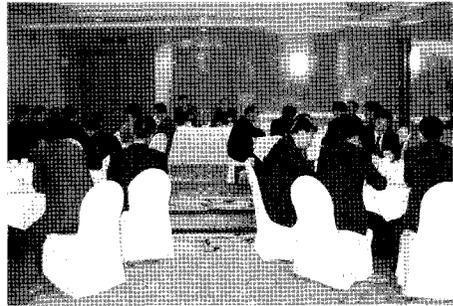
이날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기념사에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공정위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착실히 추진하고,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며,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은 단지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그치며 결국 기업 및 소비자에 의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의 자율적인 확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축사에서 대한상공회

의소 박용성 회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은 정부의 몫만이 아니며, 경쟁 당국의 통제와 감시보다 시장으로부터의 신뢰를 잃는 것이 더 무섭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부문 스스로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풍토 확립에 힘써 나가야 할 것임을 언급했다.

유공자 포상 후 가진 자율준수프로그램(CP) 사례발표에서 신세계 백화점부문 김봉호 상무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주요 실천테마인 준법경영, 협력회사 존중경영, 고객만족경영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기업 문화이자 조직풍토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자율준수프로그램 실천에 있어 매년 자율준수결의대회와 정례적 개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구축, 사전예방활동 및 자율제재조치 강화, 준법감독 및 제보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제2회 자율준수관리자 포럼(CP Forum) 개최

본 협회는 경쟁당국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업계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8일(목)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삼성전자, LG홈쇼핑, SK 등 자율준수관리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허 선 경쟁국장은 기업의 자율을 보장해 주는 것이 자율준수프로그램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하는 것보다 기업이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법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국은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령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경쟁국의 중요업무 중의 하나가 카르텔 예방으로 카르텔 연구회, 카르텔 자문위원회, 직원들

을 위한 카르텔 워크샵 등을 이미 만들었거나 준비중에 있다. 카르텔은 형법에 비유할 경우 살인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 경쟁국의 모든 역량을 카르텔 예방을 위하여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에서 카르텔 최초 신고자에게 제재를 면제해주는 사면프로그램을 1995년 최초로 시행했다고 밝히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사면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또한 카르텔 제보자에게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포상금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 질의·응답

질의 기업은 범위반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이 고의성 없이 범위반을 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한지?

응답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몇 년 전부터 사전심사제도를 도입·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과 인력부족, 시장정보 부족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전심사제도에 상당히 보수적이며, 심사비용으로 US\$250,000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가 축적되면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질의 가스부문은 2개 사업자가 있다. 그런데 2개 사업자가 비용구조나 원재료 수입과정이 동일하다. 이런 경우 필연적으로 카르텔이 형성될 수 밖에 없는데 카르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응답 사업자가 사전 합의 또는 가격 등 정보교환 없이는 카르텔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법원은 카르텔의 경우 보수적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자가 정보교환 등의 위반행위를 하기 때문에 제재를 받는 것이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포럼 참석기업

삼성전자, 삼성카드, 삼성화재, 삼성SDS, LG홈쇼핑, SK, SK가스,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오토에버시스템즈, 현대하이스코, 본텍, 현대백화점, KT, 롯데쇼핑, 창원특수강, 신세계 백화점부문, 신세계 이마트부문, 신세계건설, CJ홈쇼핑, 대우종합기계, 한화유통, 제이유네트워크, 한국백화점협회

제이유네트워크, 네트워크업계 최초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선포식” 개최



토종 네트워크마케팅 업체인 제이유네트워크(대표 : 정생균)는 25일 본사 대강당에서 주수도 주코그룹 회장 및 임직원, 사업자와 김 용 공정거래협회장 등 내외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자율준수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선포식에서 제이유네트워크 정생균 대표이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의지를 표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임명장 수여를 통해 실천의지를 다졌다.

이에 앞서 임직원 및 사업자 대표는 ▶공정거래와 소비자보호의 자율적인 실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and 소비자보호에 솔선수범 ▶관련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가하는 등의 선언문을 낭독했다.

제이유네트워크의 자율준수선포는 정도경영, 투명경영, 국민경영의 기본이념 아래, 전 임직원 및 사업자들이 공정거래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모범 기업으로서 네트워크 유통분야의 초일류 기업이 되고자 마련된 행사다.

제이유네트워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해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 표명 등 7대 실천 항목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했고 편람을 만들어 사무실에 비치하고 회원수첩에 명시하여 임직원, 사업자가 항상 유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상에도 ‘자율준수프로그램’ 페이지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고, 불공정한 사례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를 통해 접수를 받아 철저히 조사해 근절시키기로 했다.

이날 격려사에서 주수도 주코그룹 회장은 “국내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 일명 다단계판매에 대한 시선이 좁지 않을뿐더러 심지어는 피라미드로 오인되고 불법 유통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되어 중소기업·농어민 등을 살리고 실업자를 구제하는 유통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률이 지향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공정하고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기업경영을 해야 한다”며, “제이유네트워크는 공정거래관련 제반 법규의 정신을 존중하고 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내부감독체계를 구축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쟁법학회 「경제법판례연구모임 세미나」 개최

경쟁법학회의 경제법판례연구모임은 “모회사의 자회사를 위한 지원행위 내지 차별적 취급행위의 위법성”과 “필수요소의 사용 및 접근거절과 제한”이라는 주제로 3월 12일(금요일)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 Figaro Grill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 발표 주제가 된 지원행위 내지 차별적 취급행위 사건은 공정위 1998. 8. 5. 의결 제98-174호인 「엘지기업집단 계열회사 부당지원행위」(2001. 1. 30, 서울고등법원98누 13272판결)에 대한 건이며, 필수요소의 사용 및 접근거절과 제한 사건은 공정위 2001. 6. 29. 의결 제2001-090호인 「에스케이(주)의 기업결합규정위반」에 대한 건과 1999. 5. 27. 의결 제1999-80호인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2001. 7. 5, 서울고등법원99누 15312 중 일부)에 대한 건이다.

사건 개요

엘지칼텍스가스는 1997. 4. 1부터 1998. 3. 31까지 비계열사 거래처 66개에 대해서는 매출 총액대비 월 평균 6.44%의 담보부 대여금(106억원) 잔액을 유지한 반면 100% 자회사인 원전 에너지에 대해서는 매출총액대비 월 평균 32.66%의 무담보 대여금(220억원)의 잔액을 유지하여 원전에너지에 대한 월 평균 대여금 잔액의 매출총액 대비 유지 규모가 비계열사에 비하여 26.22% 높은 수준으로 완전자회사인 원전에너지를 지원한 사실과 '97특별판매 장려금지급기준으로 월 평균 판매량을 단일 충전소로는 달성이 거의 불가능한 1,500톤 이상을 설정하는 등 특별판매장려금 지급조건을 현저히 유리하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원전에너지에 특별판매장려금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한국전기통신공사는 SK텔레콤('98. 9. 17), 한솔 PCS('98. 9. 21), 한국통신프리텔('98. 11. 24)과 개인휴대통신서비스에 필요한 광중계기용 광코아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광코아 이용대가의 적용조건을 현저히 달리하면서 트레이딩대가에는 기존전화회선의 계속사용이라는 조건을 붙여 거래한 사실이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윤성운 변호사는 “엘지칼텍스가스(주)의 완전자회사 지원행위” 사건에 있어서 먼저, 100%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원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100%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원행위에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부당성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대상거래의 성격과 거래대상 재화의 특성 및 동 재화가 해당 거래당사자인 특정 계열회사 사업이나 그들이 속한 기업집단 전체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위치, 지원객체 및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의 현황 및 특성, 지원금액의 규모나 지원된 자금 등의 성격과 사용용도, 거래행위의 동기와 목적, 정당한 사유의 범위 내지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지원객체에 대한 지원행위가 실질적으로 지원주체 자신의 경쟁력 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행해지는 경우, 지원객체가 지원주체와 수직적으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거나 지원주체의 주요 유통망을 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원주체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거나 경제적 단일체로 판단되는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당성은 부인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의 시장에서의 지위가 강화되거나 경쟁조건이 유리하게 되거나 혹은 그 퇴출이 저해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지원주체 자신의 지위나 경쟁조건이 강화되는 등과 같이 구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의 신동권 행정관은 원유정제처리업을 영위하는 에스케이(주)가 석유제품의 수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송유관공사를 취득한 에스케이(주)의 기업결합규정 위반에 있어서의 핵심은 송유관이 필수설비인가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어떤 시설이 필수설비가 되려면 거래시장에서 다른 대체시설의 신설이 불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시장획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은 주로 수요시장개념에 따라 확정하는데, 본 건은 주로 운송비 측면에서 차이를 이유로 송유관을 통한 수송시장과 기타 유조선을 이용한 수송시장간에 대체관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용역시장과 지역시장을 확정하는데 있어 그 판단 기준을 혼동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즉, 관련 용역시장을 판단함에 있어 용역의 성질이나 사용목적 및 가격차이 등을 통하여 수요자입장에서 대체가능한지를 따져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심결은 송유관설비의 사업목적, 자본조달, 주주구성, 관련법률 등 수요자측면에서의 대체가능성과는 연관이 적은 기준을 제시하는 오류를 범하였는데, 이는 시장획정 문제와 필수설비의 판단문제를 혼동한 결과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있어서 시장지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시장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하며, 필수설비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개의 시장 즉, 필수설비에의 진입을 위한 1차시장과 최종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2차적 시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건에서 KT는 1차시장에서 전체 광코아 임대시장의 52.8%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KT의 광코아 제공율은 거의 독점적이며 타 시설과의 대체관계

가 없다고 보여 광코아는 필수설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차별적인 조건이 접근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인지, 기존사용자에 비해 현저하게 차별적인 가격이나 불공정한 가격이나 조건인지, KTF를 KT와 경제적 단일체로 보아 기존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등에 의문점이 있어 필수설비이론을 적용하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 작성

본 협회에서는 각 회원사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공정거래 관련 자율준수편람을 업종에 맞게 작성해 드리고 있으니,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작성 계획이 있으신 각 회원사는 상담 및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775-8870~2 FAX (02)775-8873